탄소세법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9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용혜인・이수진・조 국

한창민 · 김영환 · 복기왕

황명선 · 염태영 · 정진욱

김남근 · 소병훈 · 박수현

의원(12인)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 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

18년 7억 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한편,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장벽 체계가 들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나.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

임(안 제6조).

- 다. 탄소세의 세율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으로 함(안 제7조 제1항).
- 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0조).
- 마.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외교관·조건부·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바.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 사.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3조).
- 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 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24조 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탄소세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상) ① 탄소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경우 온실가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 1.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5.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 및 부탄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6.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나프타
- 8. 아스팔트
- 9. 항공유
- 10.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 11. 무연탄
- 12. 유연탄
- 13. 코크스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제1항의 물품이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의 동일한 품목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중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1. 물품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이 직접 에너지자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 나. 물품이 화력발전, 액화석유가스 등으로 가공·전환되어 에너 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물품이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용 원재료나 동력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이 제조의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 나. 물품이 가공ㆍ재가공ㆍ재처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다. 물품이 공정(工程)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물품이 차량, 선박, 열차, 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이 가정용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 나. 물품이 업무용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물품이 공공기관용, 상업용, 가정용 및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이 공공기관용, 상업용, 가정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 나. 농업 · 임업 · 수산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물품을 폐기하거나 폐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물품을 소각하거나 소각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 나. 물품을 매립하거나 매립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

- ④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1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2.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같은 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제4조(과세시기) 탄소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다.
-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과세물품을 첨가·혼합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과세표준) ①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 물품이 제2 조제2항의 각 해당 목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제7조제1항의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수량을 곱한 것으로 한다.

물품	수량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반출하는 물품	의 수량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
에서 반출하는 물품	구급선고일 배의 구당
제3조제3호의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수량

②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수량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세율 및 세액의 계산) ① 탄소세의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 eq)(이하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이라 한다)당 8만원으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탄소중립의 도달, 세액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탄소세의 세액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내역, 물품별 수량, 가격, 과세표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세액,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납부)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분의 탄소세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탄소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 서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탄소세액 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 제11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 1호 또는 제2호의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 가 과세물품을 해당 제조자등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송유 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

을 통하여 반출한 후 제조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저유소(貯油所)에서 다시 반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혼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 1. 납세의무자: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자등
- 2. 과세시기: 제4조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한 때
- 3. 과세표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혼유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당 물품이 제2조제2항의 각 해당 목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해당물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수량을 곱한 것
- 제12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 다.
 -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 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2.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 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3.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 또는 그 밖의 조업 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 우
- ③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제13조(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탄소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미납세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 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3.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 장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4. 제1호, 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8 조를 적용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5. 탄소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의 물품은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탄소세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로 본다.
- 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군납 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하 "주한외국 군"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한다.
 - ② 제1항의 물품은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탄소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탄소세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자가,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보아 탄소세를 징수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 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6조(외교관 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탄소세를 면제한다.
 - ②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과세물 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탄소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 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탄소세 또는 이와 유

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 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7조(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면제한다.
 -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 체에 기증되는 물품
 -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② 제1항의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탄소세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탄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 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8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에 따라 탄소세를 면제한다.
- 제18조(무조건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탄소세를 면제한다.
 -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 · 단체에 기증하는 물품
 - 2. 외국 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항선 (內航船)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3. 탄소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 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4.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탄소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 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 제19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탄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 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탄소세 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 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 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이미 탄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
 -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 조·가공한 과세물품이 탄소세가 면제되는 경우
 - 3.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③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탄소세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징수할 세액

- 이 있으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 탄소세를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탄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확급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탄소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할 가산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 8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할 때 해당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제2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과세물품의 제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영업을 승계한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하여 신고하여야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2조(장부 기록의 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장부에 그 제조·저장·판

- 매ㆍ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피승계인에 속하였던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같다.
 - 1.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 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 2. 제19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 · 의무
 - 3. 제22조에 따른 장부 비치 · 기재의 의무
 -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의무
- 제24조(명령 등)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영수증 발행, 표찰의 게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 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

- 출, 그 밖에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5조(질문 및 검사) ①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물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소지하는 것
 - 2.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장부·서류
 - 3. 과세물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재료나 그 밖의 물건
 - ② 세무공무원은 운반 중인 과세물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운반을 정지시키거나 화물 또는 선박· 차량을 봉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검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26조(탄소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제27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제24조에 따른 납세 보전을 위한 명 령을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